

2016년 2차 경찰학 기출문제 총평 및 해설

경단기 경찰학 황영구 교수
 황영구 박사의 경찰단기학교
 : http://cafe.daum.net/police2004

1. 분석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중·하**으로 **2016년 1차시험에 비해 10~15점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1번 문제는 기본서에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론 10문제, 각론 10문제**로서 총론 비중이 조금 높았으며, **법령조문 12문제, 이론 8문제**가 출제가 되어 **법령문제가 전체 60%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법령특강에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는데 **법령특강 1~2단계 100% 출제**되었으며, 모두 쉽게 해결 했으리라 봅니다.

2. 총평

전체적으로 볼 때 1~2문제는 까다로운 문제로 볼 수 있어 **경단기 기본 → 심화이론(법령+이론+ox) → 60일 작전**을 충실하게 따라온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90점 이상**은 무난히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흘린 땀은 진실합니다. 흘린 땀방울만큼 이번 시험에서 결과로 말해 줄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해설은 경찰학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 ③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④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1.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

	국가경찰	자치경찰
권한과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체계	중앙집권적 단일화된 명령체계	자치단체별 지방부권적 조직 체계
역 할	국민의 보호와 국가적 질서유지	국민의 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수 단	명령·강제라는 권력실행적 수단	권력적 수단보다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
장 점 (15.1 승진)	㉠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가능하고 비상시 유리 {97.1 승진} ㉡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조직운영·관리 {03.1 승진} {15.1 승진} ㉢ 경찰활동의 기동성과 능률성 발휘 ㉣ 전국적 통계자료의 정확성 {03.1 승진} ㉤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 {03.1 승진} ㉥ 다른 지방자치경찰과의 협조가 원활 ㉦ 경찰기관사이의 협조성 ㉧ 업무집행의 통일성 {01.1 승진} {15.1 승진}	㉠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행정이 가능 {03.1 승진, 97.1 승진} ㉡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이 높음 ㉢ 자치단체별로 독립되어 있어 조직 운영의 개혁이 용이 {97.1 승진} ㉣ 인권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의 지지가 용이 {97.1 승진} ㉤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쉬움 {10.3 승진} ㉥ 재원과 책임의 분담 {02.1 승진} ㉦ 경찰과 시민과의 유대강화 {02.1 승진} {15.1 승진} ㉧ 주민협력 치안 활성화 {02.1 승진}
단 점	㉠ 경찰 본연의 업무 이외 타행정 업무에 이용 {03.7 승진} ㉡ 지방 실정에 적합한 치안행정 수립 곤란 ㉢ 관료화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 의식 희박 {03.7 승진} ㉣ 각 지방의 특수성과 창의성의 저해 {03.7 승진} ㉤ 조직이 비대화 되고 관료화될 우려가 큼	㉠ 집행력과 기동성이 약함 {05.1 승진} ㉡ 전국적·통일적·광의적 경찰활동 곤란 ㉢ 지방세력가의 경찰행정 개입으로 경찰부패 초래 ㉣ 전국적 통계자료의 정확성의 곤란 ㉤ 다른 경찰기관 및 국가행정기관과의 협조, 응원체제가 곤란 {05.1 승진, 03.7 승진, 99.1 승진} ㉥ 기동화, 광역화범죄에 대처하기 어려움 ㉦ 전국적인 범죄예방과 대응능력의 분산

2. 「국회법」상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 ② 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2. ④

국회	① 국회의장의 국회 경호권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국회경호권 한은 일반경찰권보다도 우선)
	②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밖에서 경호한다. (09.7 순경, 08.2 경간부, 01.5 순경) (15.1 경간부)
	③ 국회 안 현행범인이 있을 경우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체포한 후 국회의장 지시받아야 하며,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국회법 제150조) (01.5 순경)
	④ 국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위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경찰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개념	경찰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행정자치부 소속의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으로 경찰청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면서 인권문제, 경찰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을 목적으로 한다. (12.1 순진, 11.8 순경, 09.1 순진, 07.1 순진, 06.3 순경, 05.10 순경, 04.3 순경, 02.3 순경, 97.1 순진, 96.1 순진)
위원장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 위원은 상임(정무직 차관급)으로 한다. (14.2 경간부, 14.1 순진, 12.2 순경, 11.8 순경, 10.2 경간부, 09.7 순경, 09.1 순진, 08.1 순진, 04.3 순경)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12.8 순경, 09.1 순진, 11.8 순경, 08.3 순경, 07.12 순경) (14. 8 순경) ③ 위원은 비밀엄수와 정치운동금지 의무가 있다.

임명	①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2.8 순경, 12.2 순경, 08.1 순진, 05.3 순경, 01.4 순경) (14. 8 순경)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①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08.1 순진)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04.1 순진, 05.1 순진) ③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1 순진, 11. 2 순경, 09.1 순진) (14. 8 순경)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2.2 순경, 03.4 순경, 09.7 순경, 09.1 순진, 06.3 순경, 05.3 순경, 01.4 순경)

4.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 ㉢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③(㉠㉢㉣)

	훈 령		직무명령
요 건	형식적 요건 (11.8 순경, 09.7 순경)	① 훈령권 있는(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급관 청이 발한 것일 것 ② 하급관청의 권한 내 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③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 는 사항이 아닐 것 ④ 훈령을 발하는데 있 어 법령의 형식과 절 차가 있으면 그를 구 비할 것	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발할 것 ②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 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 이 아닐 것 ③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범 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어 야 함 ④ 직무명령을 발하는 데 있 어 법령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그를 구비할 것
	실질적 요건 (12.10순경, 09.7순경)	① 훈령이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③ 실현 가능하고 명백 할 것	①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 ② 공익에 적합할 것 ③ 실현 가능하고 명백할 것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현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 ③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 ④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5. ②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본 원리 (10.1 승진, 09.2 경간부) (15.1 승진)	유지관리	①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② 최초 환경설계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의 실천이다. (10.1 승진, 09.2 경간부)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 조경의 관리
	영역성의 강화	①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10.1 승진) ②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을 증대시키는 원리이다. (10.1 승진, 09.2 경간부)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자연적 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려는 원리이다. (10.1 승진)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치, 출입구의 최소화
	활동의 활성화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의 의사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장소의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10.1 승진, 09.2 경간부) 놀이터·공원의 설치·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자연적 감시	①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10.1 승진) ② 가시권 확보를 통해 외부침입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원리이다. (10.1 승진, 09.2 경간부) 조명·조경·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

	(08.2 경간부)
--	------------

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최루탄·무기 등의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장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 ③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 ④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②

[요건]

경찰장구 요건 (12.10 승진, 11.2 승진, 05.1 승진, 96.1 승진)	①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②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현행범인인 경우 ④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10.3 승진)
분사기 및 최루탄 요건	①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②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③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분사기·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는 달리 효율적으로 범인의 체포·도주방지 및 위해발생을 억제할 수 없는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0.3 승진, 01.1 승진, 97.1 승진)
위해를 주지 않는 무기사용	①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②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14.1 승진, 07.12 승진, 03.7 승진, 01.2 경간부) (15.1 승진)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08.1 승진, 07.3 승진) (15.1 승진) ☞ 정당행위(×), 자구행위(×)

7.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②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 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7. ②

[시보임용]

시보 기간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2.2 순경, 11.2 순경, 03.1 승진, 02.1 승진} {14. 8 순경}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10 순경, 11.2 순경, 08.2 경간부, 05.2 순경} {14. 8 순경}
신분 보장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11.2 순경, 08.1 순경, 08.2 경간부, 05.7 순경, 05.2 순경}
교육 훈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면 직	사 유 ①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② 경찰교육 성적이 6할 미만이거나 교육생활태도 점수가 극히 불량할 때 {11.2 순경} ③ 근무성적 제2평정요소 점수가 5할에 미치지 못한 때 {03.1 승진}
	절 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아래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2.2 순경, 08.2 경간부, 08.1 순경, 03.1 승진, 05.2 순경}
면제 대상 {08.1 순경, 05.7 순경, 03.1 승진, 02.1 승진}	①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11.2 순경, 08.2 경간부, 05.2 순경, 03.1 승진}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당해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11.2 순경}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다음은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 ㉡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형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 ㉢ 직위분류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후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
- ㉣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③

[직위분류제]

개 념	① 직위분류제는 일의 종류와 난이도 및 책임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인사관리제도이다. ② 1909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08.7 순진, 07.3 경간부, 01.1 승진}
특 징	① 직위분류제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4.1 순진, 03.1 승진, 02.3 순경, 02.2 경간부} ② 직위들을 종적, 횡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직무분석(종적)과 직무평가(횡적)이다.
장 점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14.1 순진, 10.1 승진}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08.2 경간부, 07.3 경간부, 01.1 승진}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조직의 전문화·분업화에 기여할 수 있다. {08.2 경간부, 07.3 경간부, 01.1 승진} ④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08.3 순경, 08.1 경간부, 02.1 승진, 01.1 승진}
단 점	①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가 곤란하다. {08.2 경간부} ② 인사배치에 신중성과 융통성이 없다. {08.3 순경, 08.2 경간부, 01.1 승진} ③ 신분보장이 미흡하다. {10.1 승진, 08.3 순경, 08.2 경간부} ④ 합리적인 직위의 분류가 어려워 실제 적용에 문제가 많다. ⑤ 직위분류제는 조직보다 직무를 중시하므로 자기 집단이익에 집착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⑥ 직위분류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분류구조이므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불리하다.

9.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불심검문 ㉡ 범죄의 예방 및 제지 ㉢ 무기의 사용
- ㉣ 보호조치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9. ③④

즉시 강제 수단	경찰상 대인적 즉시강제 (02.1 순진)	① 경찰장비의 사용 ② 무기의 사용 ③ 범죄의 예방과 제지 (09.4 순경) ④ 불심검문(학살상 논란이 있음) ⑤ 보호조치 등 (09.4 순경) ⑥ 경찰장구의 사용 (09.4 순경) ⑦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상 대물적 즉시강제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 (02.1 순진)
	경찰상 대가택적 즉시강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09.4 순경)
	경찰상 대인·대물·대가 택적 즉시수단	위험발생의 방지

10.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0. ③

심야조사의 금지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14.1 순진)
----------	--

11.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 ③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 ④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11. ④

[경찰관직무 집행법 제2조 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긍정설	① 일반(개괄)조항을 확대해석 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을 받는다. ② 경찰권의 성질상 입법기관의 미리 경찰권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모든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09.4 순경) ③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09.4 순경, 01.6 순경) ④ 일반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09.4 순경, 01.6 순경) ⑤ 독일에서의 학설·판례가 일반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부정설	① 경찰작용은 대표적인 권력적 작용으로 법률유보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받으므로 경찰권의 발동에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요구된다. ② 헌법은 질서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권의 발동근거에 관한 개괄조항은 아니고, 그것은 다만 경찰의 직무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09.4 순경)

12.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 ② 거짓 광고, 업무방해, 양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③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 ④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다. (14.1 순진)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14.1 순진) (15.1 순진) ☞ 60만원 이하의 형사소송법 경미범죄 제한 요건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여부와 상관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	---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13. ①

임시조치의 청구 (제8조)

-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 **격리**, ㉡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2.8 순경)
-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조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유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위탁× → 법원의 임시조치에 해당)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 성장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 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 ③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 ④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①

용어

- ① 아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14.1 순경, 12.10, 순경, 11.2 순경)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 ② 실종아동 등 :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한다. (11.2 순경)
- ③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 ④ 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2.10 순경, 11.2 순경)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標識)를 말한다.
- ②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인 경우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5. ②

시간대 대상 지역	주간(해 뜬 후 ~ 해 지기 전)	야간(해 진 후 ~ 해 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65 이하 {08.1 승진}	60 이하 {12.8 순경}
기타지역	75 이하	65 이하

16.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 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① 선수승화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경쟁행위법

16. ④

경쟁 행위법	① 반대의견의 부각 ②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 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141 순경 08.7 순경, 08.2 경관부, 07.1 순진) 서울지하철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해 언론에 일반시민의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지하철노조가 굴복하 여 파업을 철회하는 경우
전이법	① 다른 이슈의 제기 ② 다중범죄의 발생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 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14.3 순경, 12.1 순진, 08.2 경관부) 다중범죄의 징후가 있을 때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 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여 이전 이슈를 상대적으로 약화시 킨 경우
지연 정화법	① 시간의 지연 ②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에 대해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 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 라앉게 하는 방법 (08.2 경관부)
선수 승화법	① 사전해결 ② 특정한 불만집단이나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 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08.2 경관부, 07.3 순경) 특정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세입자의 시위가 예상되 어 경찰서 정보과에서 관계인면담을 주선하여 대화에 의한 타협을 본 경우

17.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②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17. ②

[음주운전 주요판례]

- 1.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할 경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우선한다.[2003도6905]
- 2.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2001도7121]
- 3.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호송된 운전자에 대해 영장없이 채혈을 한 경우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2009도2109]
- 4.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아니한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였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98구23641]
- 5.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5시간 경과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 대하여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2000도6026]
- 6. 특별한 이유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2002도4220]
- 7. 흉골골절로 인한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어 심여차레 음주측정기를 붙였으나 끝내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5도7125]
- 8.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2005도7034]
- 9.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2도6632]
- 10.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10도2935]
- 11.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실제적 결합에 해당된다.[2008도7143]
- 12.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 부터 수집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 도주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 [2005도4459]

18. 「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③

대상자의 신고	대상자 신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출소 2개월 전까지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4.3 순경}
	출소사실 신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09.1 승진, 08.1 승진}
	변동사항 신고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9.1 승진}

19.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9. ④

[외국인의 상륙]

종 류	내 용	상륙기간	허가권자
승무원의 상륙 (제14조) {14.2 경간부} {15.1 승진}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하면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0.1 승진} ㉠ 승선 중인 선박 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형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 ㉡ 대한민국의 출입국 형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15일 {10.1 승진, 09.1 승진, 08.10 승진}	출입국 관리공무원
관광상륙 (제14조의2)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3일	출입국 관리공무원
긴급상륙 (제15조) {14.2 경간부} {15.1 승진}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10.1 승진}	30일 {10.1 승진, 09.1 승진, 08.10 승진}	출입국 관리공무원
재난상륙 (제16조) {15.1 승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10.1 승진}	30일 {09.1 승진, 08.10 승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난민 임시상륙 (제16조의2) {14.2 경간부} {15.1 승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2 순경, 10.1 승진, 09.1 승진}	90일 {09.1 승진, 08.10 승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20.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 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③

[범죄인인도거절 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제7조)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 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15.5 순경, 14.2 경간부, 08.1 승진, 07.3 순경}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08.1 승진, 07.3 순경}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14.2 경간부, 08.1 승진}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4.2 경간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제9조) {15.1 경간부}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15.5 순경, 08.1 승진, 07.3 순경, 04.1 승진, 03.1 승진}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15.5 순경, 08.1 승진, 07.3 순경}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15.5 순경, 14.2 경간부}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함)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08.1 승진, 07.3 순경} ⑤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14.8 순경}